정기예금_단기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▪ **상 품 명** : 정기예금_단기
▪ **상품특징** :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입대상</td><td>• 제한없음. | 가입금액 | • 10만원 이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입기간</td><td>•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(월 단위 및 일 단위 가능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자 지급시기</td><td>• 만기 일시지급식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
• 매월 이자지급식(단리식 등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</td><td>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제한 사항</td><td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이자율</td><td>기본 (세전)</td><td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</td></tr>
<tr><td>만기 후</td><td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
<table>
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
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의 당행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</td></tr>
<tr><td>1개월 초과</td><td>연0.1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만기이자 산출근거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이자 계산식</th></tr>
<tr><th>월 단위</th><th>일 단위</th></tr>
<tr><td>단리식</td><td>원금×이율/12×월수</td><td>원금×이율/365×일수</td></tr>
<tr><td>복리식</td><td>원금×{(1+이율/12)^{n}-1} (n은 경과월수)</td><td>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익률</td><td>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
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만기의 자동해지</td><td>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 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 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금 해지 시 불이익</td><td>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위법계약 해지권</td><td>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세제혜택</td><td>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•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포함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중도해지
이율
및 계산방법</td><td>• 이 율 :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
<tr><td>1개월미만</td><td>연 0.1%</td></tr>
<tr><td>1개월 이상 만기일 미만</td><td>약정이율의 50%</td></tr>
</table>
• 1개월 미만 : 연 0.1%
• 1개월 이상 만기일 미만 : 약정이율 × 50% × (경과월수 / 계약월수)
• 계산방법<예시>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.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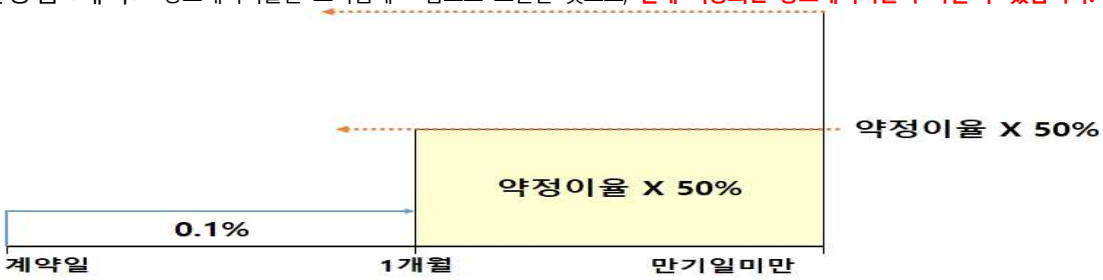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>자동재예치</td><td>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
•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</td></tr>
<tr><td>분할해지</td><td>•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</td></tr>
<tr><td>휴면예금
및 출연</td><td>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"서민금융진흥원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연계·제휴
서비스</td><td>☑ 해당사항 없음 □ 해당사항 있음(<별지>의 서식 참조)</td></tr>
<tr><td>자료열람 요구권</td><td>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
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
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600-21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angsanginplus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***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***

❶ **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□ 예 / □ 아니오 ☞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❷ **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(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)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❸ **본인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고객확인 : 20 . . . (서명/인)

◉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